

# 담보물 보존의무 확인서

채권자 (근저당권자)	상 호	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
	주 소	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5, 6층 602호(대치동, 송강빌딩)
채무자 (근저당권설정자)	이 름	(서명)
	주 소	

## 담보목적물의 표시

자동차번호		차명	
-------	--	----	--

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당사자 사이에 20 . . . . .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을 체결합니다.

< 아래 >

- ①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, 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형상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- ②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및 점유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- ③ 채무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, 훼손, 공용징수,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거나 그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위 제3항의 경우 채무자에게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,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는 때에는 다른 담보의 제공이 없는 이상 채무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며, 채권자는 이를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.